건축법 시행규칙

건설부제172호
1976. 6. 21.

목　　차

제 1 조 (건축허가 신청등)
제 2 조 (건축허가서 등의 서식)
제 3 조 (증축신고등)
제 4 조 (위법 사항의 보고)
제 5 조 (착공신고서 등의 서식)
제 6 조 (가사용 승인 신청서 등의 서식)
제 6 조의 2 (건축허가 대장의 서식)
제 7 조 (중간검사)
제 8 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 상태보고)
제 9 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10조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정리)
제11조 (안전 · 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
제12조 (위험물의 저장 · 처리 시설)
제13조 (위법 건축물에 대한 표지)
제14조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등의 보고)
제15조 (신분 증명서의 서식)
제16조 (가설 건축물)
제17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 허가신청 등)
제18조 (건축허가 표지의 설치)
제19조 (주차장의 통로 등)
제20조 (배연 설비)
제21조 (헤리콥타 이착륙시설 설치기준)
제22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제23조 (공장의 식수 등)
—— 부　　칙 ——

제 1 조(건축허가 신청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 조 제 1 항 본문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 또는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와 다음표의 (1) 난에 게기하는 도서(영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5 조의 읍 · 면장에게 위임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배치도에 한한다.) 및 (2) 난 내지 (12) 난 중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난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읍 ·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물의종별	도서의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건축허가를받아야 할 모든 건축물	부근안내도	임의	방위, 도로 및 목표가되는 지물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경계선 3. 대지 및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계 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5. 담 · 옹벽 · 우물 · 오물 · 정화조 · 배수시설 기타 건축물의 부수시설의 위치.
		토지굴착부분정리계획도	임의	1. 축 척 2. 토지의 굴착부분의정리 계획

		각층평면도	1/50 내지 1/300	1. 축척 및 방위 2. 각실의 용도 3. 벽의위치, 재료 및두께 4.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5.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6. 복도의 위치 및 폭 7. 비상용 승강기의 위치, 기계실, 기계배치와 승강장의 위치 및 폭. 8. 기타 승강기·에 스카레 이타의 위치 기계실 및 기계배치.
		오물정화조의구조 2면이상의 임면도	1/30 1/50 1/50 내지 1/300	오물정화조의 평면상세·종횡단면상세 1. 축척 2. 개구부·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 구조. 3. 굴뚝의 옥상돌출부 4. 국기게양대
(2)	법제5조 제1항제1호 내지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면이상의단면도 및 부 부분상세도	1/20 또는 1/30	1. 축척 2. 거실의 바닥높이·건축물의 높이·각층의 반자 높이. 3. 벽의 재료 및 높이 4. 내화구조의 벽 및바닥의 부분 상세 5. 처마 및 방화문의구조. 6. 난간벽의 구조 및높이 7. 계단 또는 경사로의 부분상세 8. 붙임돌의 두께 및접합 방법 9. 변소의 부분상세 10. 단의 단면상세
(3)	영제23조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구조도	1/50 내지 1/200	1. 축 척 2.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배기 평면 3.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단면 4. 철골재의 접합부분 상세 5. 철근콘크리트의 라멘상세 구조내력상 주
		구조계산서		정요한 부분의응력 산정 및 단면 산정과정
(4)	영제13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비상조명장치 배선도	1/50 내지 1/300	1. 축 척 2. 비상전원의 위치 및 배선
(5)	영제13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배관배선도	1/50 내지 1/300	배관 배선 및 접지시설
		부분상세도	1/30 이상	1. 인입관로상세 및 인입 관단면 2. 단자함의 규격, 배관상세 및 단자반 상세 3. 풀 박스 및 닥트의 상세
(6)	영제91조에해당하는 건축물.	실내마감표		반자 및 벽의 마감재
(7)	영제13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상세도	1/50 이상	비상용 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상세
(8)	기타 건축 설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설비도	임의	승용승강기·에스카레이타 기타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구조
(9)	소방관서 장의를 요하는 건축물	소방설비도	임의	옥내 소화전설비·스프링크·라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소화설비·증발액체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차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비·유도등 및 유도표시·소화용수의 위치및 수량·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상세

구분	건축물의 종 별	도서의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0)	영제11조 제 3 항에해당하는건축물	헤리포트설치도	임의	1. 축척·위치·평면·단면 및 표지 등. 2. 부근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표시한 현황
(11)	영제168조의 3 에 해당하는 건축물	식수등의계획도	임의	1. 축척 2. 식수평면계획·식수 면적 계산표 3. 수종·수형·수목의 규격 4. 식수공정계획
(12)	법제22조의 2 의규정에의해여주차장을설치하는건축물	주차장 평면도	1/50-1/300 —	1. 축척·위치 2. 주차장 평면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와 폭.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도서에 표시되어야 할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여 이를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의한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는 당해 도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는 법 제26조 제 3 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한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계 l하는 도서이외의 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 조(건축시행서등의 서식) ① 영 제 6 조 제 2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는 별지 제 1 호서식 또는 별지제 1 - 2 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부본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 영 제 6 조 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의 통지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건축불허가 통지서로 한다.

제 3 조(증축신고등) ① 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 및 영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개축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건축(증축·개축)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 1 항의 건축(증축·개축)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하단의 건축(증축·개축) 신고증을 잘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조(위법사항의 보고) 법 제 6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위법사항 시정권고에 불응한 때 또는 권고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안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착공신고서 등의 서식) ① 법 제 7 조제 1 항 및 영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서 별지 제 5 호 서식에 또는 별지 제 5 -2호 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로 완료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 6 호서식 또는 별지 제 6 - 2 호서식에 의한 준공 신고서로 한다.

② 법 제 7 조제 2 항 및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 7 호서식 또는 별지 제 7 - 2 호 서식과 같다.

제 6 조(가사용승인신청서 등의 서식) ① 법 제 7 조 제3항 단서 및 제 영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 요청은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 9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서는 별지제 9 호서식과 같다.

제 6 조의 2 (건축허가대 의 서식) 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장은 별지 제 9 - 2 호 서식에 의한다.

제 7 조(중간검사) ① 법 제 7 조의 2 및 영 제1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서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영 제10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건축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보고) ① 법 제 7 조의3 제 2 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매 2 년마다 그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를 1 급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건축 물 유지관리상태보고서에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 상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1. 준공검사필증사본
2. 배치도
3. 각층평면도(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시의 각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4. 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거실, 통로부분의 변경전, 변경 후의 마감재료표 기타 변경부분의 변경전·입면도·단면도

제 9 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 11조제 1 항에서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 1 조 각항에 게기하는 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에 "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은 이를 "협의서" 및 "협의"로 한다.

제10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 법 제 9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굴착부분은 그 경사도가 굴착유형 및 토질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비율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돌 또는 콘크리트로 보강할 것. 다만, 시장·군수는 손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축을 쌓게 하거나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굴착유형	토질	경사도
절 토	연암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 : 0.5
	모래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 : 1.5
	모래진흙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 : 1
	점토 및 이와 유사한 토질	
성 도	모든 토질에 공통	1 : 1.5

2. 제 1 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석축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하일 것.

석축높이 / 구분		1.5미터까지	3 미터까지	5 미터까지
멧쌓기	절토	1 : 0.25	1 : 0.30	-
	성토	1 : 0.30	1 : 0.35	-
찰쌓기	절토	1 : 0.20	1 : 0.25	1 : 0.30
	성토	1 : 0.25	1 : 0.30	1 : 0.35

3. 제 1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뒤채움돌 부분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일 것.

가. 석축용 돌의 뒷길이

(단위 : 센티미터)

석축높이 / 구분	1 미터이상	3 미터까지	5 미터까지
멧 쌓 기	25	35	35
찰 쌓 기	25	30	35

나. 석축의 뒤채움돌부분의 두께

(단위 : 센티미터)

석축높이 / 구분		1 미터이상 1.5미터까지	3 미터까지	5 미터까지
성토	상부두께	20	20	20
	하부두께	30	45	60
절토	상하부 두께 30			

4. 제 1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으로 조성된 대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에 건물축 외벽면에서 석축 연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기준 이상일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층수	1 층	2 층	3 층 이 상
띄어야 할 거리	1.5 미터	2 미 터	3 미 터

5. 석축으로부터 2미터이내에 배수관을 매설하고자할 때에는 주철관·강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누구가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버림콘크리트 바닥위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그 이음부분에 누수방지를 위한 몰탈시공을 함으로서 시장·군수가 누수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으로 오지토관을 사용할 수 있다.
6. 굴착부분의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것.
7.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연단에서 2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의 부분에는 지표에 불투수층을 설치 하여 지표수를 지상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시켜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8. 석축(줄눈이 없는 멧쌓기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콘크리트 옹벽에는 1평방미터당 1개소 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이면에 있는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굴착부분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굴착 부분면적의 5분의 1인상인 면적의 단을 지을것.
   다만, 시장·군수가 그 굴착부분의 토질·경사도·보강구조물의 안정성등으로 보아 손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보강구조물부분 및 배수를 위안 수로부분을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를 심거나 잔디부치기로 환경정리 (이하 "조경"이라 한다)를 할 것.

② 제 1 항의 기준이외에 굴착부분의 손괴의 방지 및 조경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시장·군수가 정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방화구조부분에 사용하는 목모시멘트판 부분
2.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 및 망입유리 부분
3.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반자·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부분
4.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제이외의 난간표분부
5. 전선·배전판·스위치·콘센트·배관설비의 부분 및 승강기의 삭도부분
6. 온돌의 굴뚝에 사용하는 스레이트관 부분

제12조 (위험물의 저장·처리시설) ①영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방법시행령 별표2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동표에 게기하는 수량의 2배 (석유류에 있어서는 10배) 이상인 수량의 물품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지상시설을 말한다.

②동일 대지안에서 2종류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에 있어서의 당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수량의 산정기준에 관여하는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지) ①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물에 출입하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대한 보고) 법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로 한다.

제15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휴대하는 증표는 별지 제 15호서식과 같다.

제16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74조제1항에규정하는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층인 재해복구용 건축물
2. 흥행 또는 전람회용 건축물로서 높이 13미터 이하의 것
3. 1층인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하의 것이거나 2층인 목조의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것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 등) ①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에 게기하는 공작물(이하 "공작물"이라 한다)의 축조허가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표에 게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할사항
부근안내도및배치도	1. 축적·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2. 대지경계선과 그 안의 공작물의 위치
입면도	1. 축 척 2. 공작물의 높이·재료의 종별 및 치수
단면도	1. 축 척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재료의 종별 및 치수
구조상세도	1. 축 척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구조계산서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산정 및 단면산정과정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에 당해 건축물에부수되는 공작물의 축소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서류및 도서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첨부서류 및 도서와 중복되는것은이를 신청서에 표시하고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허가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신청서의 부본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불허가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건축허가표지의 설치)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차장의 통로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기준 면적 이외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 부분의 장·단변중 1변 이상이 통로(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접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통로의 폭은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주차형식	통로의 폭	
	출입구가 2개이상일때	출입구가 1개일 때
평행주차	3.5	5.0
직각주차	7.6	7.6
45도대향주차	4.7	5.0
60도대향주차	6.0	6.0
교차주차	4.7	5.0

제20조 (배연설비) 영 제10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의 배연설비등을 하여야 한다.

1. 부속실의 바닥·벽 및 천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할 것.
2. 부속실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하되,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배연구 및 풍도는 불연재로 하고, 화재 발생시 유효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 하여 외기 또는 굴뚝(평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을 말한다) 에 연결할 것.
4. 배연구에는 비상전원이 설비된·배연기를설치할 것.
5. 배연기는 수동기동 장치로 하거나 연감장치에 의한 자동기동 장치로 할 것.
6. 댐파를 설치할 때에는 배연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 장치로 하되,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제21조(헤리곱타 이착륙 시설 설치 기준) 영 제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명구출을 위한 헤리곱타 이착륙 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착륙대의 길이와 폭은 2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층 바닥의 길이와 폭이 2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을 10 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착륙대의 중심으로 부터 변경 12미터 이내에는 헤리곱타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난간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착륙대의 중앙부분에는 4미터를 지름으로 하는 "H"표지를 백색으로, 착륙대의 한계선은 폭1.5센티 미터 두께의 백색선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4. 착륙대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지등을 착륙대 주변에 6개 이상 설치하되 헤리곱타의 착이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영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실면적의 합계 / 구분	3,300평방미터 미만	3,300평방미터 이상 6,600평방미터 미만	6,600평방미터 이상
집회장·전시장·호텔·병원·백화점.	1	3	매 3,3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증가
여관·사무실	1	2	
기타	1	1	

제23조 (공장의·식수등) 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지역내에 공장(주거지역내에 건축하는 새마을 공장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로 부터 대지경계선 및 건축석까지의 거리가 영 제16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요 거리에 미달되어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2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대지경계선에 접한 폭 2미터 이상의 부분과 건축선에 접한 폭 4미터 이상의 부분에는 대상수립을 형성하되, 50퍼센트 이상을 교목류로 식수 할 것.
2. 제 1 차의 대상수립을 형성한 면적이 대지 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교목류, 판목류 및 보조식재로서 군집 수림을 형성할 것.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 종은 당해 공장의 업종에 따른 공해의 유형에 적합하고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고밀도의 수림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개정 74·8·17 건설령146〉

(정본)

건 축 허 가 신 청 서

(정본) 건축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⑤자격	( )급건축사 등록제 호	
	⑥주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사 감리자	⑦성명		⑧자격	( )급건축사 등록제 호	
	⑨주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사 시공사	⑩성명또는 상호		⑪자격	건설업 면허 제 호	
	⑫주소			전화	
대지조건	⑬위치				
	⑭지역		⑮지구		
	⑯면적		⑰공사종별		
	⑱전면 도로폭		⑲도로에접하는길이		
⑳용도	주용도		기타용도		

면적 \ 구분	㉑신청구분	㉒신청이외 구분	㉓합계	㉔주차장 면적	
㉕건축면적				㉖건폐율	
㉗연면적				㉘용적율	
㉙착공예정일	년 월 일	㉚준공 예정일	년 월 일		

신청건축물 동별 개요 제 호									
㉛용도									
㉜공사종별		㉝주거용인경우 세대수							
㉞구조		㉟지붕재료							
㊱외벽재료		㊲처마재료							
구분 \ 층별		층	층	층	층	층	층	계( )층	
바닥면적	㊳신청부분								
	㊴신청이외부분								
	㊵합계								
㊶기둥치수(목조, 철근콘크리트조에 한함)									
㊷횡가 재간의 거리 (목조에 한함)									
㊸층높이 (조적조에 한함)									
㊹거실반자높이									
㊺최고높이									
㊻최고처마높이									
㊼1층거실바닥높이									
건축설비	㊽변소		비상용 승강기	㊾대수					
	㊿난방			51승강장의 면적					
	52비상조명장치		53기타						

1.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이 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7803—1—1(2—1)A(1) 1973. 9. 6 승인

190mm×268mm (백상지50g/m²)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의 경우에 한한다.)
2. 설계도서 1부

(주 의)

1. 신청건축물이 2동 이상인 때에는 신청건축물 동별개요를 동(1동의 연면적 $10m^2$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마다 따로 작성 첨부하시오.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게기한 것에 의거 구분하고 사용원동기의 출력(마력)을 기입하시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4.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미정일 때에는 기입하지 마시오.
5. 공사시공자란은 도급공사일 때에만 기입하시오.

(별지 제 1 호서식)

건 축 허 가 서

(부본)

년 월 일

제 호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

(시장. 군수) ㊞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설계자	④성명		⑤자격	( )급건축사등록 제 호	
	⑥주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사 감리자	⑦성명		⑧자격	( )급건축사등록 제 호	
	⑨주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사 시공자	⑩성명또는 상호		⑪자격	건설업(면허) 제 호	
	⑫주소			전화	
대지 조건	⑬위치				
	⑭지역		⑮지구		
	⑯면적		⑰공사종별		
	⑱전면 도로폭		⑲도로에접하는길이		
⑳용도	주요용도		기타용도		

면적 \ 구분	㉑신청부분	㉒신청이외부분	㉓합계	㉔주차장면적	
㉕건축면적					
㉖연면적				㉘용적율	
㉙착공예정일	년 월 일	㉚준공예정일	년 월 일		

신청건축물						
㉛용도		㉜지붕재료				
㉝공사종별		㉞외벽재료				
㉟구조		㊱처마재료				
구분 \ 층별		층	층	층	층	계( )층
바닥면적	㊲신청부분					
	㊳신청이외의부분					
	㊴합계					

개요제호	㊵기둥치수(목조 철근콘크리트조에 한함)				
	㊶횡가 재간의 거리(목조에 한함)				
	㊷층높이(조적조에 한함)				
	㊸거실의 반자 높이				
	㊹최 고 높 이				
	㊺최 고 처 마 높 이				
	㊻1 층 바 닥 높 이				

건축설비	㊼변 소		비상용 승강기	㊽대 수	
	㊾난 방			㊿승강장의 면 적	
	(51)비상 조명 장치		(52)기 타		

주의 : 5층 이상의 건축물,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보고를 위하여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합니다.

7803—1—1(2—1)A(2)
1973. 9.6 승인

190mm×268mm
(백상지 50g/m²)

(별지제 1～2 호서식)

(부본)

건축허가서

(주의,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2. ⑤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요.
(취락지구내에서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의건축)

제 호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에 게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

(읍·면장) 인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용 도					
⑤공사종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⑥구 조					
대 지	⑦위 치			⑧면 적	
	⑨신청구분	⑩신청이외의부분		⑪합 계	
⑫착공예정년월일	년 월 일	⑬준공예정년월일		년 월 일	

(별지제 1～2 호서식)

(정본) 건축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주의)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2. ⑤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오.
(취락지구에선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용 도					
⑤공사종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⑥구 조					
대 지	⑦위 치			⑧면 적	
건축면적	⑨신청부분	⑩신청이외의부분		⑪합 계	
⑫착공예정년월일	년 월 일	⑬준공예정년월일		년 월 일	

1. 건축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이 신청서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1부.
2. 배치도 1부.

〔별지 제2호서식〕

건축불허가통지서

년 월 일
제 호

건축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건축주 귀하

별첨 허가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계획은 다음 이유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한 건축법, 동시행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허가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시장·군수 인

이 유

7803—1—2A(1)
1973. 9.6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3호서식〕

건축(증축·개축)신고서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대지위치					
⑤지 역			⑥지 구		
⑦주 용 도			⑧공사종별	증축, 개축	
⑨면적 구분	⑩신 청 부 분	⑪신청 이외 부분 (기존부분)		⑫합 계	
⑬건 축 면 적					
⑭연 면 적					
⑮건 폐 율			⑯층 수		
⑰구 조			⑱대 지 면 적		
⑲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⑳준공예정일	년 월 일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 군수) 귀하

건축(증축, 개축) 신고증			
		제 호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대지위치			
⑤지 역		⑥지 구	
⑦대 지 면 적		⑧증·개축면적	
⑨공 사 종 별		⑩건 폐 율	
⑪구 조		⑫층 수	
⑬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⑭준공예정일	년 월 일

건축법시행규칙 제3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함

년 월 일

(시장, 군수) ㊞

7803—1—11A(1) 190mm×268mm
1973. 9. 6 승인 (신문용지50g/m²)

(별지제 4 호서식)

위법건축공사보고서				제 호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공사감리자	④성 명		⑤자격	( ) 급건축사등록제 호
	⑥주 소			
공사시공자	⑦성명또는 상 호		⑧주민등록번호	
	⑨주 소		전화	
⑩대지위치				
⑪허가번호			⑫허가년월일	년 월 일
⑬용 도			⑭구 조	
⑮대지면적			⑯층 수	지상( )지하( )
⑰착공년월일			⑱준공년월일	년 월 일
⑲건축면적			⑳연 면 적	
	㉑발생일자	년 월 일		
	㉒내 용	(이면기재)		
	㉓일 자	년 월 일		
	㉔내 용	(이면기재)		

위의 공사는 건축법 제 6 조제 2 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일 권고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아 건축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급 건축사 ㊞

(시장·군수) 귀하

별지제 5 호서식

기재상주의					
1. ※난은 기재하지 마시오. 2. ⑧⑨⑩⑪ 난은 해당기호(숫자)에 ○표 하시오.					처리기간: 즉 시
1 착공신고서		※ 접수처리확인			
		일련번호			
		성 명	(인) (직급)		
①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공사감리자	성 명		자격		
	주 소			전화	
③공사시공자	성명및상호		자격	건설업면허 제 호	
	주 소			전화	
④허 가 번 호	□□□□□	⑤허가일자 □□ 년 □□ 월 □□ 일			
⑥공 사 예정 기 간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개월)				
⑦건 축 장 소	(시·도) (시·구·군) (동·리) ※ □□□□□				
⑧지 역	0.녹지지역 1.주거전용지역 2.주거지역 3.준주거지역 4.상업지와 5.공업지역 6.준공업지역 7. 전용공업지역 8. 비지정지역 9. 비도시계획지역				
⑨지 구	01. 풍치지구 02. 미관지구 03. 고도지구 04. 교육 및 연구지구 05. 업무지구 06. 임항지구 07. 공지지구 08. 보존지구 09. 주차장정비지구 10. 공항지구 11. 자연환경보존지역 12. 특정가구정비지구 13. 방화지구 14. 비지정지구 15. 비도시 계획지구				
⑩건 축 주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영리법인 5. 비영리법인 5. 개인 6. 기타				
⑪공 사 종 별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기타				
⑫주 요 용 도	용건축물(구체적으로 기입) ※ □□□				
신축공사의경우	⑬대지면적 □□□□□ 평방미터	⑭건축면적 □□□□□ 평방미터			

건축법 제 7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동당건축내용	없 음

기재상주의

1. 용도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입하되 ※한 부분은 기재하지 마시오.
2. ⑯⑰⑱㉓㉔㉕㉖난은 해당번호에 ○표 하시오.
3. ㉓이하의 난은 착공신고대상에 주택 또는 주택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기입하시오. 재
4. 전항에 따라 기재하는 경우에 ㉗이하의 난은 이용 구분별로 해당하는 난에만 기재하시오.
   (예 : 자택이면 자택난의 ㉗㉘㉙ 난만 기재)
5.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 하시오.

2.

동당건축내용

⑮용 도	※ ☐☐☐☐☐					
골구조 ⑯골 조	1. 철골조 2. 철골·철근콘크리트 3. 철근콘크리트조 4. 조적조 5. 목조 6. 기타					
골구조 ⑰벽 체	1. 시멘트벽돌 2. 적벽돌 3. 콘크리트블록 4. 철근콘크리트 5. 기타					
골구조 ⑱지 붕	1. 스라브 2. 기와 3. 스레트 4. 기타					
⑲공사부분의 연면적	☐☐☐☐ 평방미터					
	☐☐☐☐☐☐ 천 원					
층 수	㉑지 상	☐☐ 층	㉒지 하	☐☐층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할때						
㉓공사자금	1. 국민주택자금 2. 민영주택자금 3. 주택공사자금 4. 개인 5. 기타					
㉔주택의종류	1. 전용 2. 1종병용 3. 2종병용					
㉕주택의형태	1. 단독 2. 연립 3. 아파트 4.					
㉖이 용 구 분	1. 자택	2. 급여	3. 분양	4. 임대	5. 기타	
㉗주택의호수						
㉘주거전용 바닥면적의합계						
㉙주택 1 호당면적						

〔별지 제 6 호서식〕

준공(동별준공)신고서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설 계 자	④성 명		⑤자 격	( )급건축사등 록 제 호
	⑥주 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사감리자	⑦성 명		⑧자 격	( )급건축사등 록 제 호
	⑨주 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사시공자	⑩성명또는 상 호		⑪자 격	건설업면허제 호
	⑫주 소		전화	
⑬대 지 위 치				
⑭허 가 번 호		⑮허가일자	월 년 일	
⑯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⑰준공일자	년 월 일	
⑱지 역		⑲지 구		
⑳대 지 면 적		㉑층 수		
㉒용 도		㉓구 조		
㉔최 고 높 이		㉕처마높이		

〔별지 제 5-2호서식〕 〈신설 74·8·17 건설령146〉

착 공 신 고 서
취락지구내에서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처리기간 2일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대 지 위 치				
⑤대 지 면 적		⑥건 축 면 적		
⑦허 가 번 호		⑧허 가 일 자		
⑨착공년월일		⑩준공예정일		

건축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없음

(주 의)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요.

7803—1—6(2—2)A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1974. 5.7 승인

건축물 내역	㉖명칭 / 구분	㉗신 청 부 분	㉘신청이외부분	㉙합 계		
	㉚연면적					
	㉛건축면적					
신청건축물동별개요	㉜공사종별		㉝주거용인 경우세대수			
	㉞구 조		㉟외 벽 재 료			
	㊱지붕재료		㊲처 마 재 료			
	㊳구분 / 층별	층	층	층	층	계( )층
	바닥면적 ㊴신 청 부 분					
	바닥면적 ㊵신청이외부분					
	바닥면적 ㊶합 계					
	㊷용 도					
	㊸거실의 내장재료의 종 류					

제	㊹통로의 내장재료의 종류							
	㊺거실의 반자 높이							
	㊻최대방화구획의면적							
	㊼피난 계단의 종류							
	㊽건축물출입구로부터 도로에 이르는 폭							
호	㊾최 고 높 이							
	건축설비	㊿변 소		비 상 용 승 강 기	(51)대 수			
		(52)냉·난방			(53)승강장의 면 적			
		(54)비 상 용 조명장치		(55)기 타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시장·군수) 귀하

7803—1—4A(1) 190mm×268mm
1973. 9.6 승인 (신문용지50g/m²)

〔별지 제6-2호서식〕 〈신설 74·8·17 건설령146〉

준 공 신 고 서 (취락지구내에서의일정규모이하의건축물의건축)				처리기간 1일(서울시) 2일(시, 군)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용 도	주택, 부속건축물, 잠실, 축사, 퇴비사			
⑤공사종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요변경, 용도변경			
⑥구 조	목조, 콘크리트 블록조, 흙벽돌조, 토담조			
⑦대지위치				
⑧대지면적		⑨건축면적		
⑩허가번호		⑪허가일자	년 월 일	
⑫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⑬준공일자	년 월 일	
설 계 자	⑭성 명		⑮주민등록번호	
	⑯주소및사무소명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시장, 군수) 귀 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음

(주 의)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2. ④⑤⑥란은 해당란에 ○표 하시요.
3. 설계자란은 건축물 구조가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공사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것에 한하여 기입하시요.

7803—1—4(2—2)A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1974. 5.7 승인

〔별지 제7호서식〕

준공(동별준공)검사필증

제 호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군수)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설계자	④성 명		⑤자 격	( )급 건축사등록제 호
	⑥주 소			
공 사 감리자	⑦성 명		⑧자 격	( )급 건축사등록제 호
	⑨주 소		전화	
공 사 시공자	⑩성명또는 상 호		⑪자 격	건설업 면허 제 호
	⑫주 소			
⑬대지위치				
⑭허가번호		⑮허가일자	년 월	
⑯지 역		⑰지 구		
⑱대지면적		⑲층 수	⑳지하층의수	

구분 / ㉑명칭	신청부분	신청이외부분(기존)	합 계	㉒주차장면적
㉓건축면적			㉔건폐율	
㉕연 면 적			㉖용적율	
㉗용 도	주 용 도		기 타 용 도	

청 건 축 물 동 별 개 요 제 호	㉘공 사 종 별		㉙주거용인경우 세 대 수				
	㉚구 조		㉛외 벽 재 료				
	㉜지 붕 재 료		㉝처 마 재 료				
	㉞구분 / 층별	층	층	층	층	계( )층	
	바닥면적 ㉟신 청 부 분						
	바닥면적 ㊱신청 이외 부분						
	바닥면적 ㊲합 계						
	㊳용 도						
	㊴거실의 내장 재료의 종 류						
	㊵통로의 내장 재료의 종 류						
	㊶최대방화구획의면적						
	㊷거실의 반자 높이						
	㊸건축물출입구로부터 도로에 이르는 폭						
	㊹피난 계단의 종류						
	㊺최 고 높 이						
	건축설비 ㊻변 소		비 상 용 승 강 기	㊼대 수			
	건축설비 ㊽냉 난 방			㊾승강장의 면 적			
	건축설비 ㊿비 상 용 조 명 장 치		(51)기 타				
검사년월일		년 월 일					
검사원직위성명							

7803—1—5A(1) 190mm×268mm
1973. 9.6 승인 (백상지 60g/m²)

〔별지 제7-2호서식〕 〈신설 74·8·17 건설령146〉

준 공 검 사 필 증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건축)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 군수) ㊞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④용 도	주택, 부속건축물, 잠실, 축사, 퇴비사			
⑤공사종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요변경 용도변경			
⑥구 조	목조, 콘크리트 블록조, 흙벽돌조, 토담조			
⑦대지위치				
⑧대지면적		⑨건축면적		
⑩허가번호		⑪허가일자	년 월 일	
⑫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⑬준공일자	년 월 일	
⑭검사년월일	년 월 일			
⑮검 사 원 직위성명				
설 계 자	⑯성 명		⑰주민등록 번 호	
	⑱주 소 및 사무소명			

7803—1—5(2-2)A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1974. 5.7 승인

〔별지 제9호서식〕

가 사 용 승 인 서

제 호

건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축물을 검사한결과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년 월 일까지 가사용을 승인함.

년 월 일

(시장·군수) ㊞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허가번호		⑤허가일자	년 월 일	
⑥대지위치				
⑦주 용 도		⑧공사종별		
⑨가사용층수	지상( )지하( )	⑩구 조		
⑪가사용바닥면적		⑫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⑬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⑭검사년월일	년 월 일			
⑮검사원직위성명				

주의 1. 이 승인서는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시오.
2. 이 승인서를 받은후 건축공사중 위법사항이 생기면 취소됩니다.
3. 이 승인서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7803—1—17A 190mm×268mm
1973. 9.6 승인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8호서식〕

가사용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일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공사감리자	④성 명		⑤자 격	( )급건축사등록 제 호
	⑥주 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사시공자	⑦성명또는 상 호		⑧자 격	건 설 업(면허) 제 호
	⑨주 소		전화	
⑩대지위치				
⑪허가번호		⑫허가일자	년 월 일	
⑬대지면적		⑭건축면적		
⑮주요용도		⑯구 조		
⑰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⑱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⑲공사현황				
⑳구 분	허가내역	가사용신청내역		
㉑층 수	지상( ) 지하( )	지상( ) 지하( )		
㉒연 면 적				
㉓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건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 귀하

주의 : 공사현황은 층별로 구체적인 공정을 기입하시오.

1803—1—16A 190mm×268mm
1973. 9.6 승인 (신문용지 50g/m²)

(별지제9～2호 서식)

건축허가대장

허가번호	제 호

대장번호 제 호

①허가년월일	19 년 월 일	②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③준공년월일	년 월 일	
건 축 주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설 계 자	⑦성 명		⑧건 축 사 면허번호	
	⑨주 소 또 는 사 무 소 명		⑩등록번호	제 호
공사감리자	⑪성 명		⑫건 축 사 면허번호	
	⑬주 소또는 사무소 명		⑭등록번호	제 호
공사시공자	⑮성 명		⑯주민등록 번 호	
	⑰주소또는상호		⑱건 설 업 면허번호	제 호

대지조건	⑲위 치					
	㉖대지면적(M²)		㉑지 역	지역	⑳ 지구	지구 지구
용 도	㉓주 용 도		㉔기타용도			

구 분	㉕건축면적 (M²)	㉖바닥면적(M²)						
		층						연면적
기존부분 허가부분								

㉗구 조	㉘건폐율 (%)	㉙용적율(%)	㉚건축물높이(M)		㉛주차장 면적 (m²)		
			기준층의 층 고	최고높이	옥 내	옥 외	계

㉜담 당 공 무 원		과 장	계 장	담 당
	허 가	인	인	인
	준 공	인	인	인

증·개축및용도변경등허가변경사항

구분		1 차 허 가	2 차 허 가	3 차 허 가
㉝ 건 축 주				
㉞ 허 가 번 호		제 호	제 호	제 호
㉟ 허 가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설 계 자	㊱성 명			
	㊲사무소명			
공사감리자	㊳성 명			
	㊴사무소명			
공사시공자	㊵성 명			
	㊶상 호			
용 도	㊷주 용 도			
	㊸기타용도			
㊹ 건축면적(M²)	허가부분			
	계			
㊺ 연 면 적(M²)	허가부분			
	계			
㊻ 건폐율 (%) (기존포함)				
㊼ 용적율 (%) (기존포함)				
㊽ 주차장면적 (기존포함) (M²)	옥 내			
	옥 외			
	계			
㊾ 건물물최고높이 M²				
㊿ 준공년월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51) 담 당 공 무 원	과 장	인	인	인
	계 장	인	인	인
	담 당	인	인	인

〔별지 제11호서식〕

중 간 검 사 필 증

제 호

건축법 제 7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 공사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군수) ㊞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④대 지 위 치				
⑤허 가 번 호		⑥허 가 일 자	년 월 일	
⑦지 역		⑧지 구		
⑨대 지 면 적		⑩건 축 면 적		
⑪연 면 적		⑫공 사 종 별		
⑬층 수	지상( )지하( )	⑭구 조		
⑮주 용 도		⑯건 폐 율		
중간검사내역	⑰기초부분			
	⑱옥상부분			
⑲검사년월일	년 월 일			
⑳검사원직위·성명				

7803—1—19A 190mm×268mm
1973. 9.6 승인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10호서식〕

중 간 검 사 신 청 서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공 사 감 리 자	④성 명		⑤자격	( )급건축사등록 제 호
	⑥주 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 사 시 공 자	⑦성 명		⑧자격	건설업면허제 호
	⑨주 소	전화		
⑩중간검사예정일	년 월 일			
⑪허 가 번 호		⑫허 가 일 자	년 월 일	
⑬대 지 위 치		⑭지역·지구		
⑮대 지 면 적		⑯건 축 면 적		
⑰층 수	지상( )지하( )	⑱연 면 적		
⑲공 사 종 별		⑳주 용 도		
㉑구 조		㉒건 폐 율		
㉓공 사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중간 검사 내역	㉔기초부분			
	㉕옥상부분			

건축법 제 7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 귀하

7803—1—18A 190mm×268mm
1973. 9.6 승인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74·8·17 건설령146〉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

건축주·관리자 또는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점검건축사	④성 명		⑤자 격	급건축사 등록 제 호				
	⑥주 소 및 사무소명							
⑦대 지 위 치								
⑧준공검사필증 교부일자	년 월 일		⑨제 회 보고일자	년 월 일 (제 회보고)				
⑩지 역			⑪지 구					
⑫대 지 면 적			⑬층 수		⑭지하층의 수			
⑮건 축 면 적			⑯주 차 장 면 적					
⑯연 면 적			⑱건 폐 율		⑲용적율			
⑳주 용 도			㉑동 수					
건 축 물	㉒구 조		㉓외벽재료					
	㉔지 붕 재 료		㉕처마재료					
	층별 / ㉖구 분	층	층	층	층	층	계( )층	
	㉗바 닥 면 적							
	㉘용 도							
	㉙거 실 의 내 장 재 의 종 류							

동별개요 제 호							
	㉚통로의 내장재의 종류						
	㉛거실의 반자높이						
	㉜최대방화구획면적						
	㉝피난계단의 종류						
	㉞건축물의출입구로 부터 도로에 이르는 통로의 폭						
	㉟최고높이						
	㊱관리기간						
건축설비	㊲변소		비상용승강기	㊳대수			
	㊴냉, 난방			㊵승강장의면적			
	㊶비상용조명장치		㊷기타				
㊸준공검사필증교부후수리 혹은 변경내역							
㊹기타변경사항							

1. 건축법 제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 이 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니다.

(첨부서류)

1. 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
2. 배치도 1부
3. 각층 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시의 각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1부
4.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통로부분의 변경전·변경후의 입면도·단면도 각 1부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 군수) 귀하

7803—1—20A 190mm×268mm

1973. 9. 6 승인 (신문용지 50g/m²)

(별지제14호서식)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보고서

설계자	①성명		②자격	( )급건축사등록제 호
	③주소및사무소명	전화		
공사감리자	④성명		⑤자격	( )급건축사등록제 호
	⑥주소및사무소명	전화		
공사시공자	⑦성명또는상호		⑧자격	건설업면허 제 호
	⑨주소	전화		
건축주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소	전화		
⑬대지위치				
⑭허가번호			⑮허가일자	년 월 일
⑯지역			⑰지구	
⑱대지면적			⑲건축면적	
⑳구조			㉑연면적	
㉒층수	지상( ) 지하( )		㉓주요용도	
㉔공사종별			㉕건폐율	
위법사항	㉖발생일자	년 월 일		
	㉗내용	(이면기재)		
적발자	㉘적발일시	년 월 일		
	㉙직급성명			
조치사항	㉚일자	년 월 일		
	㉛내용	(이면기재)		

건축법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및 관련설계자등을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

〔별지 제13호서식〕

위법건축물표지

①위치			
②건축주		③공사시공자	
④허가또는 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⑤허가번호	
⑥주요용도			
⑦위반사항			
⑧조치사항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7803—1—21A 750mm×400mm

1973. 9. 6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사 진

건축물등출입검사공무원증

소속 직명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자 19 . . .
지 19 . . .

위 공무원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건설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

7803—1—7A(1) 9Cm/m×7Cm/m

1973. 9. 6 승인 (청상지 120g/m²)

〔별지 제16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 호	
	③주 소		전화	
공사시공자	④성명또는상 호		⑤자 격	건설업면허제 호
	⑥주 소		전화	
⑦위 치				
⑧대 지 면 적		⑨건축면적		
⑩주 용 도		⑪연 면 적		
⑫건 폐 율		⑬층 수		
⑭존 치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⑮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⑯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건축법 제47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시장·군수) 귀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접수증

년 월 일

제 호

건축법 제47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접수함.

(시장·군수) ㊞

건 축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 호	
	③주 소			
④위 치				
⑤대 지 면 적		⑥건축면적		
⑦용 도		⑧연 면 적		
⑨건 폐 율		⑩층 수		
⑪존 치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⑫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7803—1—23A 190m/m×268m/m
1973. 9.6 승인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74·8·17 건설령146〉

(정 본)

처리기간
2일

옹벽및공작물등축조허가신청서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 호	
	③주 소			전화
설계자	④성 명		⑤자 격	( )급건축사등록제 호
	⑥주 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 사 시공자	⑦성명또는상 호		⑧가 격	건설업면허제 호
	⑨주 소			전화
⑩대 지 위 치				
⑪지 역		⑫지 구		
⑬대 지 면 적				
⑭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⑮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작물의 개요	⑯종 류			
	⑰높 이			
	⑱구 조			
	⑲공 작 물 규 모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부근 안내도 및 배치도·입면도·단면도·구조상세도·구조계산서 각 1부.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

2803—1—3(2—2)A(1) 190/mm×268m/m
1973. 9. 6 승인 (신문용지 50g/m²)

〔별지 제17호서식〕

(부본)

옹벽및공작물등축조허가서

제 호

이 허가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의 축조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그 축조를 허가함.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설계자	④성 명		⑤자 격	( )급건축사등록 제 호	
	⑥주 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 사 시공자	⑦성명또는 상 호		⑧자 격	건설업면허제 호	
	⑨주 소			전화	
⑩대 지 위 치					
⑪지 역			⑫지 구		
⑬대 지 면 적					
⑭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⑮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공작물 의개요	⑯종 류				
	⑰높 이				
	⑱구 조				
	⑲공 작 물 규 모				

7803—1—3(2—2)A(2) 190m/m×268m/m
1973. 9.6 승인 (신문용지 50g/m²)

(추 6)

〔별지 제18호서식〕

건 축 허 가 표 지				
건축주	①성 명			
	②주 소			
설계자	③성 명			
	④사무소명			
공 사 감리자	⑤성 명			
	⑥사무소명			
공 사 시공자	⑦성명또는 상 호			
	⑧주 소			
공사현장 관 리 자	⑨성 명			
	⑩주 소			
⑪허 가 번 호			⑫허가일자	
⑬대 지 위 치				
⑭건 축 면 적			⑮연 면 적	
⑯주 요 용 도			⑰층 수	지상( )지하( )
⑱공 사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허가기관)				

7803—1—8A(1) 500m/m×350m/m
1973. 9.6 승인